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83호 2026. 6. 23.(화)

www.gongju.go.kr

선람	기관의장	회람						

공 주 시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규　　칙】

제699호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3
제700호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3

【공　　고】

제2026-1816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5
제2026-1826호 공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 30

【고　　시】

제2026-12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2
제2026-127호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177호, 소로2-금학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3

2026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6. 5.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6월 23일

공주시 규칙 제699호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결정) ①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학력, 경력, 그 밖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활동비 등)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등)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시의 예산 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5조(자문기구)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문기구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기구 회의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문기구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고충민원의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2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4조(정당한 사유)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을 1년이 지난 후 인지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및 사무기구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합의) ① 위원회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되거나 당사자 간 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고충민원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고충민원 결정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위원회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공인의 사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허가장 등 각종 자료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刻印)하여 사용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정보의 보호) 위원 등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table>
<tr><td>성 명</td><td>(漢字)</td><td>생년월일</td><td></td><td rowspan="3">사 진</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주 요 경 력 사 항</td></tr>
<tr><td colspan="2">기 간</td><td colspan="3">내 용</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지원 계기</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5"><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구비서류></td></tr>
<tr><td colspan="5">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추천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td></tr>
<tr><td colspan="5">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신 청 인</td><td colspan="3">(서명 또는 인)</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 직 ○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1. 신청인</td><td>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td><td colspan="2"></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4">(휴대전화)</td></tr>
<tr><td rowspan="4">2. 대표자 또는
대리인</td><td>성명</td><td colspan="4"></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4">(휴대전화)</td></tr>
<tr><td>신청인과의 관계</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3. 피신청인</td><td>기관명</td><td colspan="4"></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4. 민원 제목</td><td colspan="5"></td></tr>
<tr><td>5. 민원 내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6. 그 밖의
참고사항</td><td colspan="5">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td></tr>
<tr><td colspan="5">나. 증거·참고자료, 그 밖의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td></tr>
<tr><td colspan="6">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대리 작성의 경우)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td></tr>
</table>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처리				비고
	접수일	신청인 (대리인)	성 별	주소 (연락처)	민원명	피신청인	조사자	처리일 (의결일)	처리내용	처리결과 통보일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단체 명칭)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4.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

비고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3.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하

비고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 고충민원 조사통보서

1.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조사가 실시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	
조사기간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2. 이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직원(☏ 04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

공주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협조자

시행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

우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9-8(봉황동) / www.

전화 ( ) 팩스 ( ) /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9호서식]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고충민원의 조사)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041-××××)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

직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www.000.go.kr

전화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0호서식]

신분증명서

(앞 면)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 ×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공 주 시

60mm × 90mm

(뒷 면)

신 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 우리시에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공주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민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고 충 민 원 조 사 결 과 통 보 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신청하신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조 사 결 과	
조 치 내 용	

2026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26. 5. 29.)에서 의결된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6월 23일

공주시 규칙 제700호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표지”를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 후 별표 3 자동차 표지”를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로, “등록 관리한다”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경우에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중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로, “180일까지”를 “180일까지의”로, “발급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6 - 1816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동 조례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수정하고 각 분과별 위원 수 제한(10명 이내)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제9조제1항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변경

- 기존 5개 분과위원회를 정부 및 상급기관 정책방향에 따라 탄력 운영 필요

□ 제9조제2항 분과별 위원 수 제한(10명 이내) 규정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6. 18. ~ 2026. 7. 8.(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감사실(기획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본관2층 기획감사실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tankboy111@korea.kr
- 전 화 : 041-840-2022 / FAX : 041-840-370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 041-840-202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5개 이내 분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경제도시 분과 : 산업, 경제, 도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 분과 : 역사,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분과 : 교육, 복지, 보건, 보훈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 분과 : 농업, 농촌, 환경, 생태에 관한 사항 5. 혁신개발 분과 : 행정, 혁신,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5개 이내 분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6 - 1826호

공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공 주 시 장

1. 개최목적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07. 16. (목) 15:00

나. 장 소 :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87-1)

3.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개요

가.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관내 공업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제외)

다. 주요내용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기반시설 계획방향, 환경관리방향 등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또는 공청회 종료 후 서면으로 제출

나. 제출기간 : 2026. 07. 16.(목) ~ 07. 30.(금)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메일 ※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작성

1)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2) 전자메일 : kshw608@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서

『공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질문 및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의견란」을 작성하여 공청회 폐회 후에 제출하여 주시거나 직접방문, 우편 또는 전자메일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및 방법은 공고문 참고

공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의견내용>			

공주시 고시 제2026-12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6. 12.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설동2길 6 외 5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6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6. 12.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주시 고시 제2026 - 127호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177호, 소로2-금학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금학동 330-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6월 15일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참조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 붙임 2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3 참조

붙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77	6	국지도로	791	중로3-8	대로2-6	일반도로	공주시 고시 제2014-22호 14.03.03	
변경	소로	3	177	6	국지도로	611	중로3-8	소로2-금학4	일반도로	공주시 고시 제2014-22호 14.03.03	
신설	소로	2	금학4	8	국지도로	180	소로3-177	대로2-6	일반도로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77	소로 3-177	· 노선 변경 - 폭원 : 6m - 면적 : 8,023㎡ → 5,877㎡ - 연장 : 791m → 611m	· 소로3-177호선 일부 구간의 선형변경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
-	소로 2-금학4	· 노선 신설 - 폭원 : 8m - 면적 : 2,185㎡ - 연장 : 180m	· 기 결정된 소로3-177호선을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8m이상 부분을 분리하여 소로2류로 결정

붙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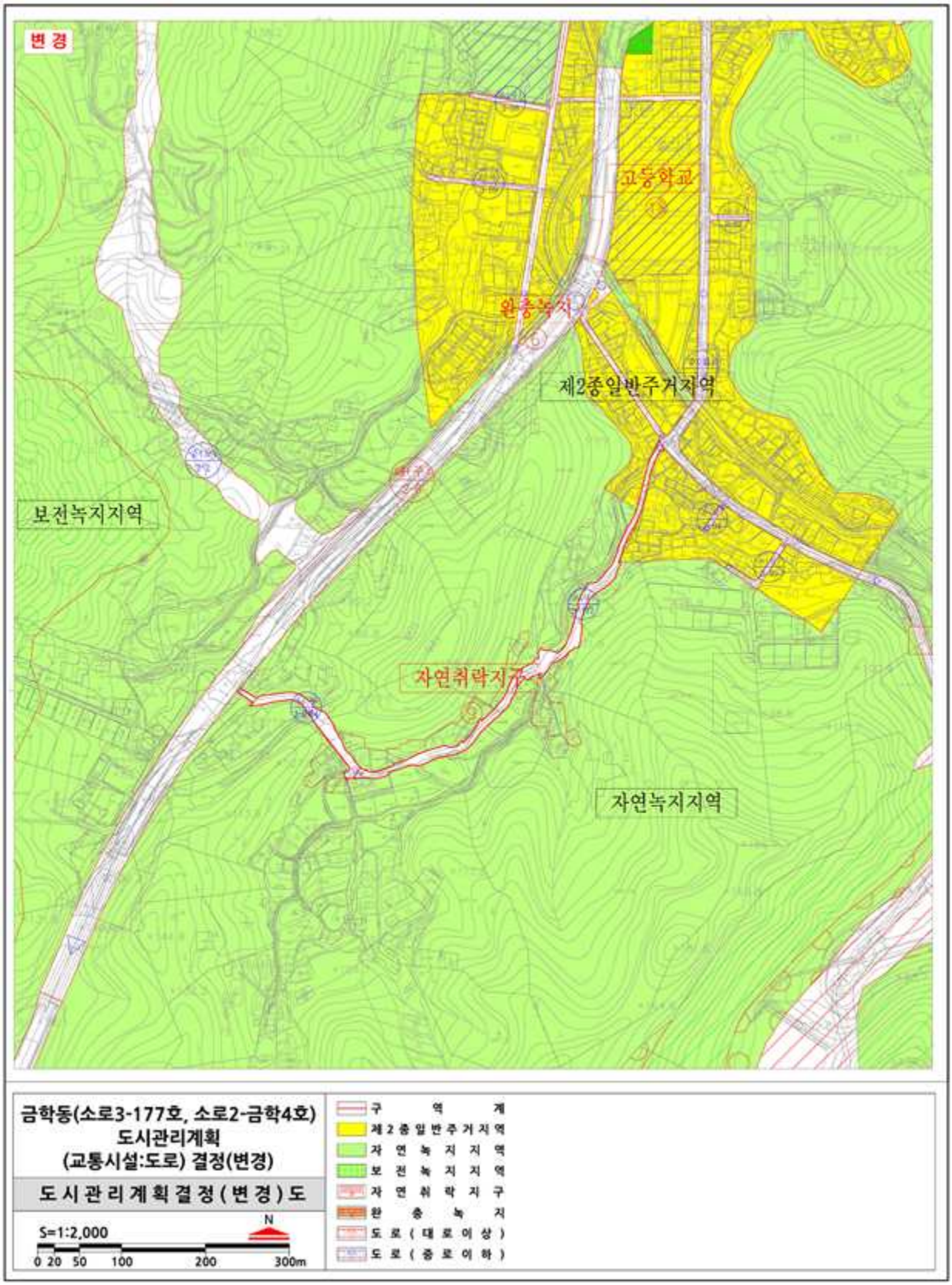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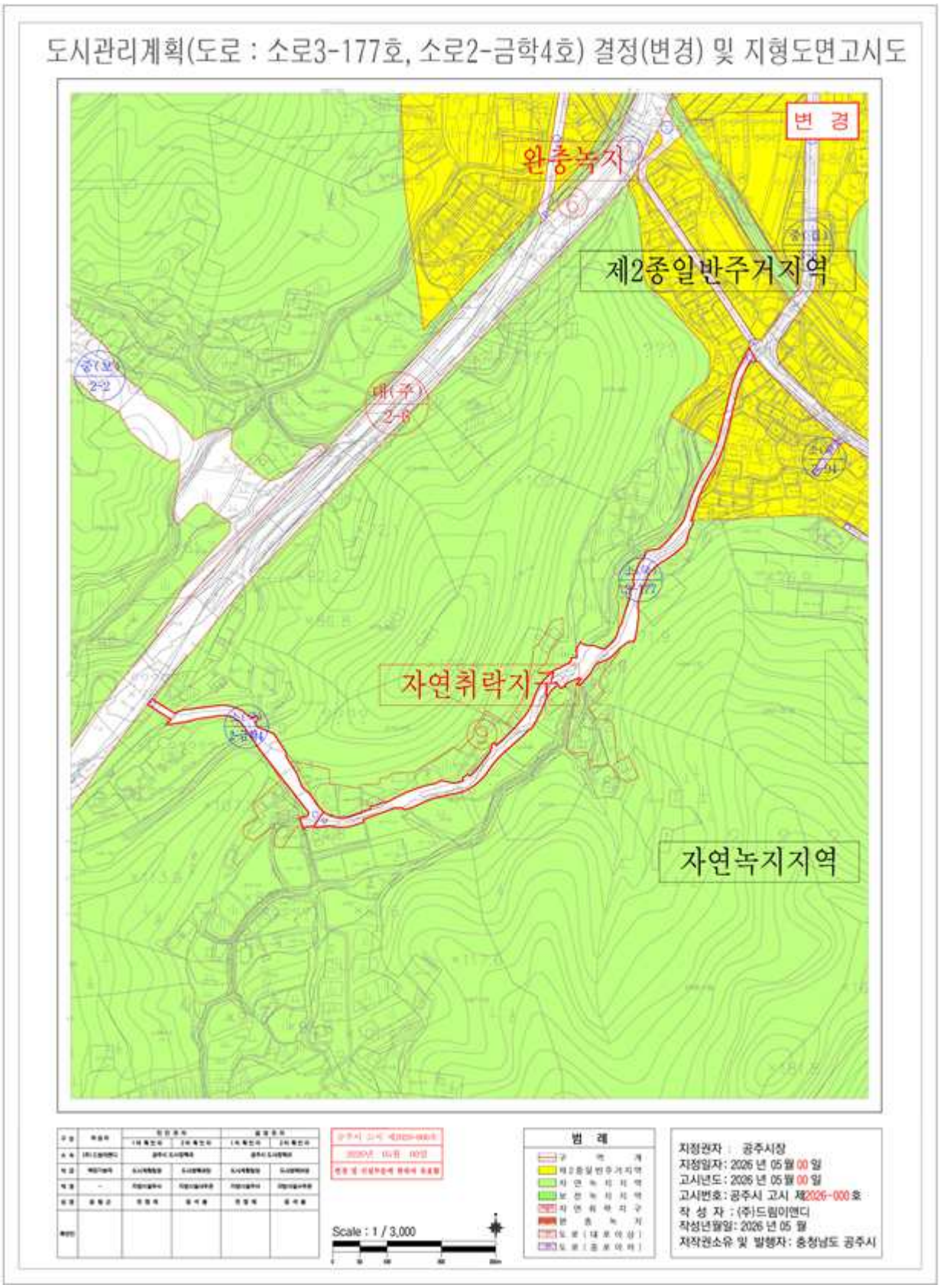
붙임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